

이주·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김 선 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담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나 시민사회주도의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주자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이주·다문화를 둘러싼 쟁점이나 문제점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목표나 관점의 차이, 정책(또는 지원) 대상에서의 차이, 지원 사업에서 견지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사업의 주체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정책과 지원 사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주·다문화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해결점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이주·다문화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정부는 큰 틀에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이주,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정부주도, 시민사회주도, 거버넌스

* 국제뇌교육대학원 평화학과

1. 이주민 100만의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봄?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이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등록 외국인인 2008년 85만 4,0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단기 및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은 11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167만 6100명으로 추정해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본격적인 이주의 역사는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난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를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¹⁾

다문화사회로의 진전과 다문화가정²⁾이 날로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부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국제결혼을 적극 후원하였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문

1) 다문화사회에 대한 규정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 기준으로 이민자 비율이 10%를 넘기면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로 간주된다. 한국 사회는 아직 이민자 비율이나 이민자 구성의 다양성으로 따지면 다문화사회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활동가는 이미 다문화가정의 2세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나 아니냐의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다.

2) 다문화가정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외국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정부주도의 지원 사업은 가족주의 틀 내에서 가족통합정책에 초점을 맞춰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시민사회 주도 지원 단체의 경우 이주여성의 권리나 지위문제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고 전 세계적 경향에 부합하는 ‘다문화’라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김희정 2007, 38). 또한 이주노동자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로서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사회적응과 인권침해 소지들이 사회 쟁점화 되면서 다문화 담론은 급속히 부각되었다.

여기에 정부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위탁사업 형태로 민간단체가 적극 개입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다문화주의가 확산되었다. 각 언론매체에서도 다문화사회를 쟁점화해서 다루는가 하면, ‘러브인 아시아’, ‘미녀들의 수다’ 등 일상적인 TV 프로그램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반인에게까지 다문화 담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다문화센터 설립을 통해 지원 사업에 나서는가 하면, 다문화연구소를 설립해 다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 활동에 나서면서 다문화 붐을 일으키고 있다.³⁾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법인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다문화의 붐이 일면서 이제까지 민간단체에 의존했던 이주자 지원 사업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면서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관심의 폭도 예전의 ‘이주노동자’에서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난민에 이르기까지 이주민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다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주도 다문화주의가 결혼이민자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에서 이주여성으로 국한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주자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이주·다문화

3)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부산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를 둘러싼 쟁점이나 문제점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목표나 관점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지원사업의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 정책(또는 지원) 대상에서의 차이, 지원 사업에서 견지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지원사업의 주체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정책과 지원 사업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주·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다문화 정책과 담론 차원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지원 사업 내용을 분석한 연구도 몇몇 대표적인 단체에 대한 사례연구로 한정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주·다문화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특성과 한계를 보이는지 그 전체상을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델 정립과 다문화지원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버넌스 모델도 아직 구체성을 결여한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다문화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지원 사업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주체별 다문화지원사업의 특성과 한계 및 과제를 고찰한 후,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정부주도와 시민주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관점, 정책대상이 누구인가 또는 지원이 누구에게 제공되는가와 관련된 수급자격(allocation),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와 관련된 급여체계(benefit), 누가 전달할 것인가의 전달체계(transfer),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재정(financing) 및 운영방식 등의 차이이다.

분석대상은 정부주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100개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자와 실무자 네트워크(<http://www.migrant.kr/>)에 등록된 시민주도 118개 지원단체이다. 여기서 정부주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지원 사업을 의미하며, 시민사회주도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⁴⁾

분석방법은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지원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과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 정부문건, 각종 통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센터 방문 및 면접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

2. 이주·다문화가정 현황과 실태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등록 외국인인 1998년 14만 7,914명, 2003년 43만 7,954명, 2008년 85만 4,007명으로 10년 새 6배가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단기 및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은 11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167만 6,100명으로 추정해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법무부출입국 2008년 5월).

2009년 현재 170여 개국에서 건너온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48만 4,674명으로 전체 등록 외국인의 57%를 차지한다. 베트남 7만 9,848명, 태국 3만 5,100명이고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특정 국가 출신이 외국인의 절반을 넘고, 대부분은 방문 노

⁴⁾ 물론 현실적으로 정부주도 지원 사업에 민간단체가 위탁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명확하게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지원 사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형태라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정부주도 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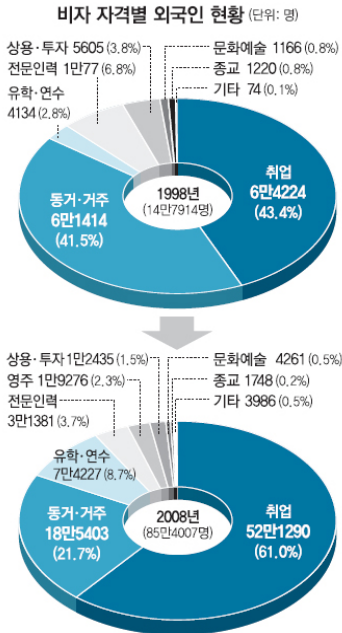
동자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규정하는데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기에는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단기체류 단순기능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09. 2. 2).

「동아일보」(2009. 2. 2)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최근 10년간 외국인 통계를 제공받아 2009년 한국의 다문화 현주소 분석을 시도한 결과, 비자자격별 분석결과(그림1) 단순기능 인력의 비중은 61%인데 비해 전문 인력은 3.7%에 불과했다. 각각 43.4%, 6.8%였던 10년 전 상황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고급 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다만 유학 및 연수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도 2003년 4만 4,416명에서 12만 2,552명으로 증가했다.

국적별 특징을 보면, 중국동포는 방문취업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인은 결혼이민자가 많다. 러시아인과 일본인 역시 결혼 이민자가 많고, 미국인은 영어회화 지도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가 많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심각하다. 전체 외국인 60%나 되는 51만 2,034명이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인구 1,000명당 86.8명으로 밀집도가 가장 높고 이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가 83.3명, 서울 금천구가 72.5명, 부산 강서구가 71.0명, 전남 영암군이 68.4명 등이다.

〈그림1〉 비자 자격 별 외국인 현황



〈표1〉 국적별 외국인 현황

2008년 국적별 외국인 수 순위 (단위: 명)

1 중국	48만4674 (한국계 중국인 포함)
2 베트남	7만9848
3 필리핀	3만9372
4 태국	3만51
5 미국	2만8853
6 인도네시아	2만7394
7 대만	2만1789
8 몽골	2만1201
9 일본	1만8251
10 우즈베키스탄	1만4981

자료: 출입국·입국통제청

〈표2〉 지역별 등록 외국인 현황

2008년 등록 외국인 수 (단위: 명) 합계: 85만4007명

강원	1만2892	광주	1만1923	서울	25만5207	전북	1만8749
경기	25만6827	대구	1만9877	울산	1만4472	제주	4902
경남	5만1707	대전	1만4056	인천	4만8521	충남	3만5254
경북	3만5731	부산	3만1499	전남	1만9690	충북	2만2700

출처: 「동아일보」, 2009. 2. 2

등록 외국인중 결혼이민자 비율도 2000년 3.5%였던 것이 2008년 11%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08년 혼인통계결과에 따르면(통계청 2009. 6. 3), 2008년 외국인과 혼인은 3만 6천 2백건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한국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혼인은 총 8,041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하였으며, 외국 남자의 국적은 일본 2,743건(34.1%), 중국 2,101건(26.1%), 미국 1,347건(16.8%) 순이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만 8,163건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하였다, 단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8,300건으로 전년보다 1,700건(25.3%) 증가하였다.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중국 1만 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여자와 혼인한 비율은 농어촌 13.8%로, 도시 7.6%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8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혼인한 남자 6,500명 중 38.8%인 2,500여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고, 이들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1,290명), 중국(673명), 필리핀(207명), 기타(30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외국 여자와 혼인한 건수는 도시지역(동부) 1만 9,900건으로 농어촌 지역(읍·면부)의 7,900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혼인연령차가 평균 11.8세로 한국인 부부 혼인연령차(2.3세)보다 9.5세 많게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노동력부족과 농촌총각 결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받아들여지면서 2003년 이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표 3>은 통계청이 2008년 혼인 통계 결과로써 전체 혼인의 11.0%가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외국인과의 혼인통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총혼인건수 대비 구성비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출처: 통계청(2008).

결혼이민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2세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수는 2007년 4만 4,000명에서 2008년 5만 8,000명으로 31.8% 늘었다. 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수는 2010년이면 10만 명을 넘어 2020년이 되면 1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미만이 57.1%, 만7-12세가 32.2%, 만 13-15세가 6.3%, 만 16-18세가 4.3%로 나타났다. 이 중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전체 다문화가정 2세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별 현황

구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 수	58,007	33,140	1,8691	3,672	2,504
비율(%)	100	57.1	32.2	6.3	4.3

출처 행정안전부(2008).

3.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국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란 좁게는 이주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했지만 그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하거나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아주 정치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개념 규정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광의의 이상적으로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국경없는 마을 리플릿 2006)을 뜻할 수도 있고, 협의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이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Kymlicka 1995)을 뜻할 수도 있다. 정치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상호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통해 시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 프로젝트”(김남국 2005)를 뜻할 수도 있다(오경석 2007, 26에서 재인용).

세부적으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스펙트럼은 지향성의 차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향성 내부에서의 차이점 역시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문화주의는 여러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 내용과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의 적용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논쟁적인 특성은 이처럼 다문화주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로부터 시작되어 각각의 입장 내부의 차이로 확산·심화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오경석 2007, 25-28).

그렇다면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 글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정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로 구분하고, 각 주체별로 다문화주의의 목표나 지향점, 다문화주의의 주체 인식, 다문화주의 관점, 다문화주의 내용과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주도 다문화주의

이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인종, 민족,

종교 등 이질적인 다인종 다민족사회에서 생기는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유지 발전시켜갈 것인가를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 해법으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실천해 오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급격히 늘면서 한국사회도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사회 통합방안으로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최근 2년 사이에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노동허가 불허’와 ‘가족동반 불허’라는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정부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급작스럽게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다문화주의’가 정책 담론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오경석 2007, 31).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기본은 합법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을 이분화하여 관리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6년 11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 법 마련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키로 결의하고,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때 재한외국인이라 함은 합법적인 외국인에 국한한 정책으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여성, 다문화가정 2세 등으로 국한된다. 한마디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이다.

또한 외국인 관리 메커니즘을 보면 국제결혼을 한 여성과 남성은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합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귀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합법적인 체류자나 정주자로 규정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이자, 관리 메커니즘으로 볼 때 정부가 정책 대상 범주로 삼는 것은 결혼 이민자

가정이라 할 수 있다.

〈표5〉 한국에서 이주자 관리의 메커니즘

	세부구분	법적지위	관리기제	한국사회 통합여부	국민/비국민
국제결혼	국제결혼여성	합법	다문화주의	통합 대상	준국민
	국제결혼남성	합법	-	-	준국민
아동	국제결혼아동	한국인	다문화주의	통합대상	국민
	이주노동자 자녀	불법	최소인권	귀환대상	비국민
이주노동자	등록 이주노동자	합법	고용허가제	귀환대상	비국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강제추방, 의도적 묵인	귀환대상	비국민
재외동포 (중국)	동포	합법 불법	동포취업제	통합-귀환 대상	준국민 비국민

출처: 이선옥(2007, 102)

국가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할 때 외국인을 합법성의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고, 정책의 대상을 합법체류 외국인에 한정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과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개별 외국인의 인권과 특수상황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윤인진 2007, 265).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에게 인권과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국내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이고, 결혼이민자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진정한 사회통합과 현실적인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희정 2007, 69). 오히려 이주노동 정책이 다문화주의적인 외국인 통합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이주노동자는 더욱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 역시 가부장적 순혈주의에 근거한 동화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희정 2007, 68). 정부주도 다문화정책이 이민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결혼 이민자를 가족주의 틀 내에서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고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학계에서 주도하는 다문화주의를 가리킨다. 윤인진(2007)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를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from below)’ 또는 “풀뿌리 다문화주의(grass-root multiculturalism)”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담론의 확산에 따라 이주자 지원 단체와 정부사이의 협력통로가 구축되면서 이들 지원단체가 NGO와 GO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선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들 지원단체의 활동 중 어디까지를 운동의 영역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선옥 2007, 83). 특히 정부주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민간단체들이 대거 위탁 사업형태로 참여하게 되면서 정부주도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도 사실이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의 주체인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 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처지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구하게 된다(윤인진 2007,

266). 소수자로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에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자녀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시민단체에서 ‘다문화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부터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급격하게 늘면서 그 해법으로 정부나 민간이 ‘다문화’를 채택하게 되면서부터였다(이선옥 2007, 83). 그 이전까지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이 주요 의제였다. 그간 이주노동자의 체류안정과 신분보장, 인권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주노동운동 내에 다문화주의가 부상한 것은 최근 이주노동자 지원세력이 세분화되면서 일부 단체들이 시민권 및 다문화 담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한국 정부가 소수자 문제를 다문화문제로 규정한 것은 이주노동자 운동권 진영에서 다문화담론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점과 일치한다(김희정 2007, 76). 물론 다문화주의가 전체 이주운동을 관통하는 의제는 아니나 최근 정부정책과 예산안 증액이 맞물리면서 다문화주의가 이주운동 내에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선옥 2007, 83).

현재 이주노동운동은 크게 1995년 7월에 결성된 지원 단체 협의체인 ‘외국인노동자노동운동협의회(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하 외노협)’, 이주노동자의 영주권·시민권 획득을 강조하는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노동권을 강조하는 ‘서울경기인천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 외노협 소속단체였던 안양전진상복지관 등이 외노협에서 분리해 나와 이주여성 문

제를 특화시켜 다루는 ‘이주여성인권연대’를 결성했다. 이주여성인권 연대는 2004년 안산이주민센터(구 안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을 주축으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이주민의 시민권 활동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주노동운동이 내적 분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중 소수자인 이주여성의 문제를 특화시켜 다루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상담소들은 이주여성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 2001년 이후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그 활동영역이 확대·특화되고 있다. 이런 이주노동운동의 내적분화에 따라 이주노동운동 내의 의제는 초기의 인권보호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노동권, 시민권, 이주여성의 권리, 다문화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주노동운동 의제의 다양화는 이주노동운동 내부의 다양한 주체, 노선,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운동 내의 내적인 힘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이선옥 2007, 86-90).

이주노동운동진영 외에도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운동 성격을 지닌 단체들이 만들어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거나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공동의 연합체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쉼터기능에서 복지지원,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화하고,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 전달한다. 불법이주노동자 배제라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강제추방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단속 때문에 국가와 시민단체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 그들을 대변하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주체를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다문화주의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문화주의의 실질적 구성원들에게 다문화주의 정책의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몫이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생활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윤인진 2007, 265).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 국가발전에 보다 초점이 두고 있다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인권 및 권익향상이라는 목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을 다문화주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따라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국익과 공공선의 이름으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

4. 이주·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1) 정부주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

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다문화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중복지원의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의 소과제를 분담 시행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총괄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7).⁵⁾ 현재 대표적인 정부주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00개 센터가 있다.⁶⁾

다문화 가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9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마다 하나씩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80개에서 2009년 4월 현재 100개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지원센터를 포함하면 120여개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은 주로 사회적응과 융합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제시한 것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더불어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다문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7개 과제는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6)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건강관리지원센터(다문화가족팀)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 기관으로 위탁하고 2006년 21개소, 2007년 38개소, 2008년 80개소, 2009년 100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9). 또 필자가 면접 조사한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목적은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한국 내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 통합분위기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9 리플릿). 정부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목적은 적응과 융합, 국가발전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주도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이다. 정부의 정책대상이란 것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국민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모든 이주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준 국민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주·다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운영방식은 정부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점센터와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지역 센터로 구분된다. 2009년 8월 현재 거점센터는 5개(동대문구, 청주시, 익산시, 울산시, 구미시)이고, 전국적으로 센터는 100개이다. 지역 센터는 지자체직영과 위탁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위탁사업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계약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단체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체 100개 센터 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단체는 현재 16곳이고, 나머지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에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⁷⁾ 복지단체, 대학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복지단체가 가장 많았고, 문화원

이나 여성관련 단체도 다음으로 많았다. 이주·다문화 관련 단체가 선정된 경우는 10개에 불과했다. 이것은 다문화주의 관점보다는 복지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조직규모나 사업능력, 장소구비 여부 등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등 현실적인 조건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주·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의 목적이나 관점이 상이하거나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설립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역량이 축적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특수성상 단순히 사회복지나 사회통합의 대상이 아닌 다문화주의나 인권, 성인지적 관점 등 전문성이 얼마나 사업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가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은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역량강화(취·창업), 통번역 자조모임, 정서지원사업,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강사파견, 아동양육지도, 맞춤형 사업으로서 희망근로사업 등 20여 가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이 있고, 특화사업으로는 정서지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다.

필자가 면접 조사한 아산시다문화가족센터의 경우 시 직영 센터로 650명의 이주여성이 등록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 우리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모임,

7)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가능한 법인 및 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특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직영센터가 아닌 위탁사업으로 선정된 지원센터의 활동목적이나 사업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⁸⁾

〈표6〉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사업	사업 내용
한국어교육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한국어클리어반(통·번역반), 한국어능력시험반
우리사회 이해교육	예절교육 및 전통놀이체험, 지역문화탐방 한국전통무용만들기, 전통요리교실 명절 풍속 예절교육
가족교육	행복한 가족만들기 부부교실 2세대자녀교육 방문지도사교육 아동양육교육
상담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시부모대상 상담 생활유형, 문화차이, 취업, 교육
자조모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일본, 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아산시 특화사업	멘토링결연사업, 상담사자격 취득반 운영, 보건의료지원, 산후도우미지원, 노래자랑대회참가, 다문화의상패션쇼, 다문화강사교육, 다문화인식개선사업, 2세 아동 사회통합교육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센터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취·창업사업이다. 지역축제에서 요리 판매, 마사지사, 원어민 강사, 통역 등의 취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숫자는 많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통·번역사 4명이 상근하면서 통·번역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데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영어가능) 언어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⁸⁾ 참고로 안산 YWCA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활동목적이나 주요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족지원센터의 목적은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체계를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 통합 분위기 확산을 들었으며 주요활동은 교육사업, 결혼이민자가족역량강화, 정서지원, 다문화인식개선, 연구조사, 방문서비스 등이다.

2008년부터는 18명의 아동양육지도사와 14명의 한국교육지도사가 114곳의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방문교육으로는 한국어 교육, 양육문제 상담, 문화교육, 예방접종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실시된 방문교육 사업으로 다문화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협력프로그램으로는 인근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과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인근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은 순천향대에서 비즈수업과 한국어고급반을, 호서대에서 장 담그기와 문화 체험을, 폴리텍대학에서 마사지수업 등이 있다. 기업과의 협력프로그램은 삼성코닝정밀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산시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정 2세 아동의 교육 사업으로 과학과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주·다문화 가정 지원 민간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은 없었다. 실제 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도, 시군구 직영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나 법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도 다른 이주·다문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위탁사업을 하는 시민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과 지원사업의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서비스 전달자 역할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필자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과에 이주·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실제 등록된 민간단체 중 세 곳⁹⁾ 외에는 민간단

9)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한국결혼상담소협의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 등, 세 곳으로 현재 위탁사업을 하거나 정부와 교류 협

체 수나 단체명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정부주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시민주도 이주·다문화 지원 사업 단체와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간 단체의 현황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파악되지 않아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시민주도 이주·다문화 지원 사업 목적과 정부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이나 방향이 일정정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있다고 판단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정부주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성과나 변화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인식 제고와 정착 이주민의 지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응답했다. 아산시의 경우 결혼 10년에서 2~3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주여성이 거주하는데 먼저 정착한 이주민이 새로운 이주민 정착을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사업 영역도 점차 넓어져 이젠 지역 특성에 맞는 영농기술 교육이나 통번역사업, 다문화가정 2세 아동 언어발달 사업까지 확장되었다고 응답했다.

개선점으로는 지원사업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과 수혜자의 선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 간 서비스나 수혜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경우는 왜 우리 지역에선 이런 혜택은 없냐고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정착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지원대상의 선별도 일정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리해보면, 국가주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이주여성의 문제를 정책화시킴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에는 기여했지만 지원 대상을 이주여성의 가정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이라

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는 이분법적 이주자 관리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목적이 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통합,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부장적 순혈주의 전통을 의거해 가족주의 틀 내에서 이주여성을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다문화주의나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지원 사업 내용도 방문교육,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주여성의 인권이나 권익향상, 역량강화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보다 다문화의상패션쇼, 노래자랑, 정서지원사업으로 친정부모 맏어주기 등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지원 내용 등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시민사회주도의 이주·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이제까지 한국에서 이주·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은 주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주도해 왔다. 현재 시민주도 이주·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행정안전부 내고장살림(www.laiis.go.kr) 외국인주민지원기관 단체현황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70여개, 민간단체 350여개 단체로 추산된다(<http://migrant.kr>). 미등록단체나 파악되지 않은 단체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주자가 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주·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붐이 일면서 정

부와 민간영역으로부터 다문화가족 관련 위탁사업을 수혜하기 위해 앞 다투어 시민단체가 난립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시민주도 지원 사업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보호(임금 체불, 폭행, 인권침해)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았다. 현재는 시민주도 지원 사업이 이주노동 지원 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 단체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운동이 분화하면서 이주노동을 하던 단체가 사업영역을 넓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나서는가하면, 새롭게 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운동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매년 다문화 관련 시민 단체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주·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새롭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추가해 전개하는 경우이다. 둘째, 여성단체들이 여성인권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셋째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존 시민단체들이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로 구분된다.

2009년 8월 26일 현재 이주자와 실무자 네트워크(<http://migrant.kr>)에 등록된 이주·다문화 지원 단체는 118개이다. 이들 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단체의 활동목표, 사업내용,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설정되어 있고 각 단체에 대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118개 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정확한 소재 파악과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 단체 정보나 활동에 대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자발적으로 등록한 단체인 만큼 그만큼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단체들의 주요 사업목표는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역사회 적응력배양과 권익보호”, “인권보호와 권익향상”, “가난

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과 함께하는 지구촌공동체”,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평화로운 지구촌”, “인간과 삶, 문화들의 다양성 존중”,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 실현” “평등한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 “국경과 인종을 넘는 소통과 공존과 평화” 등을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와 인권, 권익, 공동체, 다양성, 소통, 공존, 그리고 평화” 등이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합·불법 유무와 상관없이 이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주도 지원사업의 목적이나 관점이 인권에서 문화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정부의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나 차별적 조치 때문에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또 이런 관점의 차이는 이주자 지원사업의 내용에서도 정부의 지원 사업 내용과도 일정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18개 단체들의 주요 관련 사업 및 지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담지원이나 공익지원에 보다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단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표7>과 같이 상담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공익지원, 정보지원, 기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지원 단체는 통역지원, 연구사업, 멘토 양성, 문화교류, 다문화이해 특강, 방송, 정신건강향상사업 등을 하는 단체도 있다.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보면 상담지원은 노동, 출입국, 산재, 이주여성, 재외동포, 국제결혼/가정, 생활관련, 취업, 의료상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복지지원은 쉼터 지원, 도서관 지원, 영유아 탁아방 지원, 문화체육행사지원 등이 있다. 교육지원에는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교육, 한국문화체험, 직능개발 등이 있으며, 공익지원은 연대활동, 외국인권 개선활동, 공동체지원이 있다. 정보지원으로는 인쇄물 제작, 온라인 정보 사이트 운영 등이 있으며, 기타 지원으로 장례 지원 등이 있다.

〈표7〉 이주·다문화가정 지원 단체들의 지원활동

구분	지원 내용
상담지원	노동 상담, 출입국상담, 산재상담, 이주여성상담, 재외동포상담, 국제결혼/가정상담, 생활관련 상담, 취업상담, 의료상담
복지지원	쉼터 지원, 도서관 지원, 영유아탁아방 지원, 문화체육행사지원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교육, 한국문화체험, 능력개발
공익지원	연대활동, 외국인권개선활동, 공동체지원
정보지원	인쇄물 제작, 온라인 정보 사이트 운영
기 타	장례지원

전체 118개 단체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개, 경기 37개, 인천 7개, 경남 7개, 충남 5개, 부산 5개, 경북 5개 순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지원단체가 많은 것은 이주자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주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 지원단체도 많고 활동도 활발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지원 단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단체가 많았고,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새롭게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순수하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 118개 단체 중에서 이주민 자녀 지원센터는 단 한곳에 불과했고,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는 단체는 두 곳에 불과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및 다문화가족 2세들의 사회적응과 교육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독자적인 사업영역으로 선정하고 활동하는 단체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쉼터기능을 담당하는 단체는 다섯 곳에 불과했고 다른 지원활동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는 단체도 많지 않았다. 다행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천·경기지역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지역적으로 컴퓨터가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이것은 컴퓨터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다문화가정 지원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지원 단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원사업 영역은 다양해지고 연대활동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의 격차도 커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주도의 민간단체 활동도 꾸준히 그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인지적 관점이나 다문화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전문화된 시민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원사업 내용면에서 보면 이주자의 인권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나 네트워크 구축, 법률적 지원, 이주자를 위한 방송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상담지원이나 공익지원 사업에서는 시민주도 지원사업의 장점을 살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교육, 복지 지원영역에는 정부주도 지원 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시민주도 지원 사업이 주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회비나 자체 내 사업충당금, 기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큰 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공간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정부의 지원 사업 확대와 맞물려 지원 단체들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시민주도 이주자지원 단체들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정부의 정책 제언자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의 정부대행기관으로 나서면서 지원단체들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성상 다문화
를 표방하는 지원 단체들이 이주노동문제나 미등록 노동자 문제 해결
에 소극적이 되고 있다(이선옥 2007, 103). 이주운동 단체의 분화에 따
른 운동 단체들의 혼종적 성격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 등의
의제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이주자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큰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 ‘이주자(합법 불법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여성의 자
녀)’의 문제가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의 서비스 전달자로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면서도, 이주자를 대변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
단체의 본연의 활동과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인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3)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의 이주·다문화가족지원사업 비교

지금까지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분석
해 본 결과 몇 가지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목적이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지원
사업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부주도 지원사업의 목적은 한국 사회 적
응, 통합,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사
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적응, 인권보호, 권익향상 문화의 다양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지원이 누구에게 제공되는가와 관련된 수급자격(allocation), 즉
정책(또는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주도 지원사업
의 정책대상은 합법적인 결혼이주여성에 국한한 반면, 시민사회주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합·불법 유무와 상관없이 이주자 전체가 해당된다. 정부주도 지원 사업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과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라면, 시민주도 지원 사업은 ‘이주·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떤 서비스가 전달되는가와 관련된 급여체계(benefit), 즉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주도나 시민사회주도 지원 사업 모두 상담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인식개선, 아동양육지도, 맞춤형 사업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영역별로는 차이가 있다. 정부주도 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화이해 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을 필수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9). 반면 시민주도 지원사업의 경우 상담지원, 공익지원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주도 지원사업의 경우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의 인권이나 출입국 관련, 법률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한 단체들이 많았던 반면, 정부주도 지원센터에서 상담기능은 가족상담 정도로 국한되었다. 또 이주자 권익향상을 위한 공익지원(연대활동, 외국인인권개선활동, 공동체지원)도 시민주도 지원 사업에 국한된 사업 내용이었다. 이것은 정부주도 지원사업이 교육·복지서비스(social service)에 보다 초점이 두어진 것이라면, 시민주도 지원사업의 경우 이주·다문화가정의 교육·상담·복지, 권익향상, 인권 등에 초점을 두고 복지서비스(social service)와 권익향상(empowerment)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누가 전달하는가(transfer)와 관련하여, 정부주도 지원 사업은 지자체 직영과 민간 위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자는 일부 지자체와 다수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주도 지원 사업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원 단체의 성격을 보면, 정부가 위탁한 민간단체의 경우 복지단체, 대학 내

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복지)단체가 주를 이루었다면, 시민사회주도 지원 단체는 이주노동자단체, 이주·다문화지원단체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지원 단체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도,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원사업의 주안점이 정부 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에, 시민사회 주도 지원사업은 이주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서비스에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된 재정(financing)의 경우, 정부주도 지원 사업은 지자체 직영이나 민간위탁 모두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주도 지원 사업은 회비 및 자체 내 사업충당금, 기타지원금 등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정부주도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자원 마련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민주도 지원 사업은 재정 및 인적·물적 자원은 취약한 상태이다. 활동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안정적인 자원마련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보고서 제출 등 문서 업무(paperwork)가 너무 많다는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주도 지원 사업은 재정적 어려움, 공간부족, 법적·제도적 제약의 어려움을 들었다. 다문화가정2세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는 많으나 공간이 부족하고, 법적으로 1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법적 규제가 현실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가를 지적했다.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지원사업의 목적, 관점,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운영방식, 지원 단체의 성격, 재정, 사업상 강점 등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8〉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의 지원 사업 비교

	정부주도	시민사회주도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더불어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다문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 •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 통합분위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적응력배양, 인권보호, 권익향상 • 지구촌공동체, 인간과 삶, 문화들의 다양성 존중 •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 • 평등한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 • 국경과 인종을 넘는 소통과 공존과 평화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 융합, 국가발전 • 교육, 복지서비스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권익, 공동체, 다양성, 소통, 공존, 평화 • 복지서비스와 권익향상에 초점
지원 대상 (all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결혼이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불법 유무와 상관없이 이주자 전체
사업내용 (benef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역량강화(취·창업), 통번역 자조모임, 정서지원사업,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 강사과건, 아동양육지도, 맞춤형 사업으로서 희망근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공익지원, 정보지원, 기타 지원, • 통역지원, 연구사업, 멘토 양성, 문화교류, 다문화이해 특강, 방송, 정신건강향상사업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직영과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운영
지원 단체 및 성격 (trans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개(120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70여개, 민간단체 350여개 • 등록단체 기준 1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시·도, 시군구) 직영 • 복지단체, 대학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복지단체가 많음 • 이주노동자·이주여성 지원 단체 약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단체, 이주·다문화지원단체가 많음 • 여성, 인권, 복지단체가 새롭게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재정 (fin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 및 자체 사업충당금, 기타 지원금
사업상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공익지원

국가주도와 시민주도의 이주·다문화 지원 사업은 사업의 목적, 관점, 지원 대상, 지원 단체의 성격, 사업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각각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목적을 둔 지원 사업, 이주여성에 국한한 정책대상의 한정성, 교육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 내용 등은 국가주도 지원사업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시민주도 지원사업도 정부의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다문화주의 수용과 이주운동의 제도화가 나타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 등의 의제는 약화되고 운동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약화는 이주자의 문제를 이주여성의 문제로 축소시키는데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자원의 취약성, 재정적 어려움 등은 정부의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시민주도 이주운동의 제도화를 부추기고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양자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주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다문화정책을 주도하고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이주자의 복지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면, 시민주도 사업은 지원대상의 합법 불법 유무와 상관없이 이주자의 권익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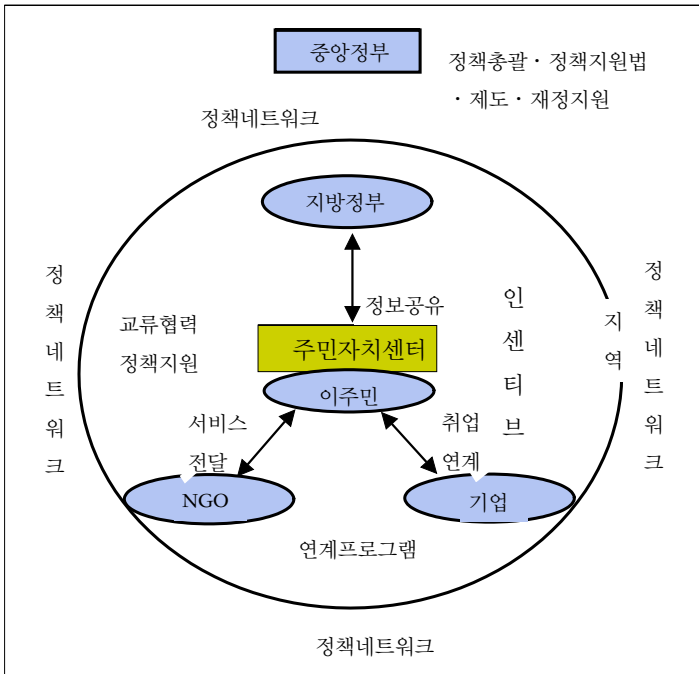
5. 이주·다문화 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국내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되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지원의

중대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늘면서 이주·다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신분보장 및 인권,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이혼급증, 다문화가정 2세 아동의 교육문제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주·다문화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해결점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큰 틀에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략적으로 도식화해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이주·다문화 지원사업의 민관 거버넌스



각 주체별 역할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역할로는 첫째,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주의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지만 임기응변식의 다문화정책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이주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정책 및 이주자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정책보다 인권 지향적 정책수립으로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88). 물론 재원마련을 통한 재정지원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이주·다문화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수요자가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이주·다문화지원 서비스를 담당한다. 현재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위탁사업 형태로 참가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주도의 지원 사업이 지원서비스에 ‘오는 사람만 온다’는 ‘다문화쇼피깅객’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각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정부주도 지원 사업이 합법적인 정책대상자로 국한하다보니 이주여성에게 한정된 지원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현실적으로 이주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정부주도 사업만으로는 이주자의 인권, 노동권, 문화적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 실현이나 전체 이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주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주운동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민간단체는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해소하는 한편 이주자의 인권, 권익향상을 위한 이주자 운동과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 전달자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민간단체를 지원서비스의 전달자로서가 아닌 정책제안에서 서비스 전달에 이르기까지 동등한 정책협력자로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의 면접 인터뷰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토대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틀을 구축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이주·다문화 지원 사업에서 실수요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지리적으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로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지원 주체들 간의 정보공유와 수요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이주자 체류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정착 프로그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주자의 대부분이 한국 사회 적응도 문제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원한다. 이주자

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고착화되어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주자들의 장기적인 정착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처럼 다문화고용촉진법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주자를 위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이주·다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주자의 가족 및 일반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다양성을 수용할 때 공존·공생의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심하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의 경우 더 차별적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문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서로 다른 가치와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상호이해를 늘려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2009년 9월 20일 접수, 2009년 11월 8일 채택)

** 원고분량 초과로 <부록 1>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100개소),
<부록 2> 이주/다문화 지원 민간단체 리스트 삭제

참고문헌

- 김남국. 2005.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1).
- 김남국. 2008.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 사회』. 80.
- 김혜순. 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위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 박천웅. 2002. 『국경 없는 마을과 다문화공동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송종호. 2007.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30.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 원숙연. 2008. “다문화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 윤인진. 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대위원회.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 이선옥. 2007.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 이혜경. 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대위원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월호.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9. 『통계월보』. 6월호.

- 킴리카, 윌(Kymlicka, W). 2006. 장동진 외 옮김.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9. 『국제결혼현황』. 6월 3일.
- 통계청. 2009. 『2008년 혼인통계 결과』. 3월 26일.
- 통일부. 2008. 『통일백서』. 2008.
- 한경구·한건수. 2007.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 한국염. 2009.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http://www.smwc.or.kr>
- 행정안전부. 2008.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별 현황』. 5월.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언론자료>

- 『동아일보』. 2009. 2. 11. “정치에 뛰어든 이민자들.”
- 『동아일보』. 2009. 2. 2. “2009 다문화 현주소-한국.”
- 『동아일보』. 2009. 2. 2. “달라도 다함께, 다문화가 힘이다.”

<인터뷰>

- 부천다문화센터 활동가 인터뷰 2009. 8. 12.
- 아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가 인터뷰 2009. 8. 7.

<인터넷자료>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http://wmigrant.org/xe2/>)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ttp://withgonggam.tistory.com>)
- 다문화가정 e-배움터(<http://e-campaign.kdu.edu/>)
- 모이세 이주여성의집(<http://moyses.tjcaritas.or.kr/>)
- 부천다문화센터(<http://cafe.naver.com/multiculturefamily/>)
- 안산이주여성상담소 <http://www.migrant.or.kr/zbxe/>
- 어울림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www.eulim.org)
- 이주민과 실무자를 위한 네트워크(<http://migrant.kr/>)
- 이주민방송 MNTV(<http://www.mntv.net/>)

An Analysis of the State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 Government and Civil Initiatives

Sun-Mi Kim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are being extended while discourse on multiculturalism are growing rapidly in the Korean society. As the number and variety of immigrants are increasing, complex aspects of issues and problems surrounding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re developing. Differences in governmental and civil objectives and viewpoints, disparate policy (or support) target, and distinct viewpoints perceived by support programs are appearing with regard to multicultural policie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These differences based on the main constituents of support programs lead to discords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y show the need and possibility of governance in multicultural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In particular, since solutions must be presented within the area where immigrant and multicultural families live, cooperation between locally active NGOs and local governing bodies is essential.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civic and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take charge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support services by utilizing their ability to provide locally-based and practical support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 governance framework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upport for policies, and economic support within a large framework.

Key words: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 government initiative, civil initiative, governance